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33호

「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30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개정으로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7조)
- 나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9조제5항)
 -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경감 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/☎033-640-4034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

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ps7430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조례 제 호

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해서는 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50”을 “8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구매자에 대한 지원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구매자에 대한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해서는 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</p>
<p>제9조(충전시설 보급 확대) ① ~ ④ (생략) ⑤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<u>50</u>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충전시설 보급 확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<u>80</u>-----.</p>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법 규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